

주제회의  
노인

“국가폭력 피해 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

주철희  
[한국, 역사공간 벗 연구원]

# 국가폭력 피해 노인의 삶과 기억, 그리고 공동체 여순항쟁 유족의 삶과 기억<sup>1)</sup>

## 1. 들어가면서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항쟁<sup>2)</sup>부터 1950년 6·25전쟁 시기까지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학살이란 ‘말살’ 혹은 ‘절명’을 뜻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의 창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기를 걸치면서 대한민국은 확고한 반공국가이며 이분법적 사회질서를 완성하였으며, 빨갱이문화(반공문화)를 창조하였다.

따라서 피학살자의 유족은 새로운 질서와 문화 속에서 최하위 계층을 삶을 살면서도, 항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그리고 억압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청·장년기의 시대 상황은 자의든 타의든 학살을 망각하거나 새로운 질서와 문화에 편입해야 하는 선택을 강요하였다.

현재 1세대 유족이 대부분 돌아가신 상황이며, 1945년 해방 전후로 태어난 분들도 어느덧 7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청·장년기의 고통과 차별은 7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그들의 기억 속에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여순항쟁 유족회’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최하층의 삶에서 벗어났지만, 당시 각인된 경험 또는 기억은 그들이 죽고 난 후에나 끝나는 전쟁일 것이다.

## 2. 여순항쟁 민간인 학살과 증언자 분석

### 1) 민간인 학살 형태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6·25전쟁 이전 경우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 그리고 군·경의 토벌과정에서 발생한 학살, 6·25전쟁 발발 직후인 7, 8월경 발생한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자 학살, 형무소 재소자에 대한 학살 등이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인민군 점령 지역에 대한 수복과정에서 발생한 협력자에 대한 학살과 미군 폭격에 의한 학살도 발생하였다. 학살 유형과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전쟁 이전 학살의 경우, 학살의 대상이 성인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을 망라한 무차별한 학살이었다. 피해지역은 전라도와 제주도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경상도 일부에서도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이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학살사건이 규명되었다. 둘째,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학살은 민간인 학살사건 중 희생자의 수가 가장 많으며 국가 주도의 계획된 학살이었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보도연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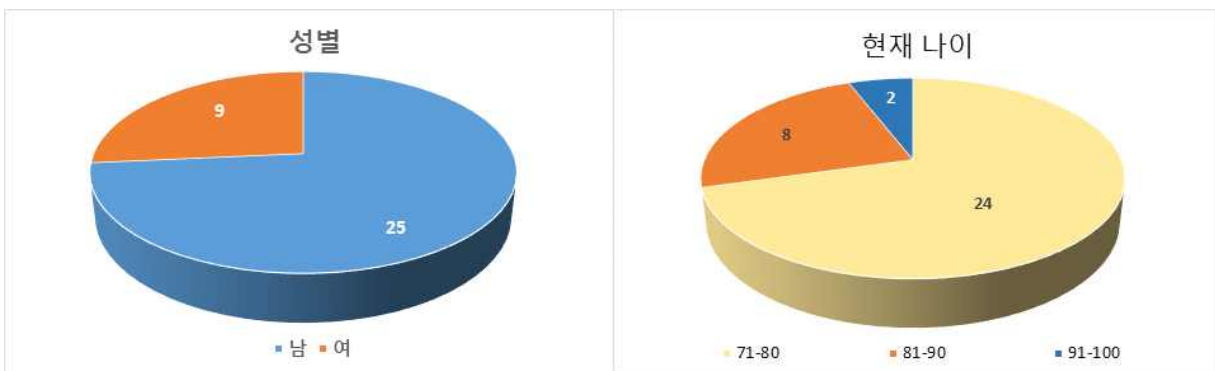
1) 이 글은 수정·보완이 필요한, 문자 그대로 ‘발표문’입니다. 하여, 사진 등의 없는 인용을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여순항쟁이란 단어는 필자가 연구를 토대로 성격을 규명한 용어이다. 특별법 제정 등에서 ‘여순사건’이란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본 사건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여순항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원에 대한 학살은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행되었다. 셋째, 전쟁이 발발하자 전국의 거의 모든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들이 학살되었다.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지 않은 미결수까지 처형의 대상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당시 형무소는 제주43항쟁, 여순항쟁을 비롯하여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자를 구금한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형무소 재소자들 대부분은 예비검속자들과 같은 시기에 학살되었다. 넷째, 부역혐의자에 대한 학살은 인민군에게 부역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학살한 경우이며, 1·4후퇴 이후 인민군 점령 후 수복지역에서 발생한 학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미군 폭격에 의한 학살이다. 이 경우는 좌·우간의 대립과정에서 발생한 학살의 형태는 아니며 주로 피난민들을 상대로 발생한 학살이다. 1950년 7월 26일~7월 29일 충북 영동군 노근리와 1950년 8월 초순 여수 안도 이야포에서 발생한 미군 폭격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2) 여순항쟁 증언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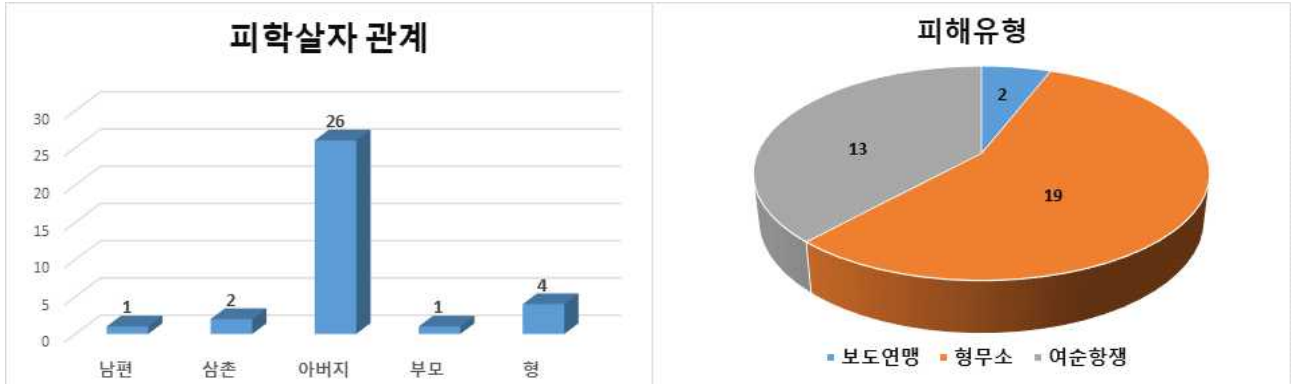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에서 2018년(『나 죄없음께 관참을거네』)와 2019년(『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 그리운 아버지』) 발간한 증언록과 박만순의 『골령골의 기억전쟁』(2019) 중 여순항쟁 관련 증언자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총 39명이 증언이 수록되어 있으나, 가족이 겹친 경우가 있어 총 34명을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은 가장 최근 증언록이기 때문이다. 그 증언자 목록은 생략한다.



증언자 전체의 평균 출생년도는 1942.5년으로, 현재 나이로는 평균 78.4세의 고령이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25명이고 여성이 9명이다. 남성의 평균 나이는 78.7세이고 여성은 77.8세이다.

피학살자와 관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족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형님이 4명, 삼촌(작은아버지)이 2명, 부모님이 모두 학살된 유족과 남편이 학살된 유족이 각각 1명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유족 26명 중에는 어머니가 남편의 죽음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얼마 후 돌아가신 경우도 2명이나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개가(改嫁)했다고 밝힌 한 유족도 6명으로 26.1%를 차지하였다. 개가의 경우 증언에서 밝히지 않은 분들이 있기에 그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 모든 유족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특히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개가한 유년의 삶은 기록하지 않았다. 천덕꾸러기 삶을 살았다는 증언이 많다.

피해 유형을 보면 국민보도연맹 관련 피해 유족이 2명이며, 여순항쟁 유족 13명, 형무소 재소자 19명이다. 이 책에 수록된 형무소 재소자 19명은 모두 여순항쟁 과정에서 체포되어 대전, 인천, 목포, 광주, 대구 등의 형무소에 수형되었고,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학살되었다. 보도연맹이나 형무소 재소



자를 별도로 피해 유형을 구분했지만, 이들은 모두 여순항쟁에서 일명 부역자혐의 등으로 체포되었기에 여순항쟁 피해자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3) 여순항쟁의 피해 학살의 규모

<표-1> 조사기관별 인명 피해 현황

조사기관	조사시점	사망	중상	경상	행불
전남보건후생국	1948.11.01	2,633	1,028	488	825
정부 사회부	1948.11.20	570	812	236	-
전남 사회과	1948.12.20	1,441	-	-	-
정부 중앙청	1949.01.10	3,392	2,056	-	82
전라남도 당국	1949.03.15	5,029	2,921	-	303
	1949.06.15	5,379	3,067	-	313
	1949.10.25	11,131	-	-	-

전라남도 당국이 1949년 3월 15일, 6월 15일, 10월 25일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발표하였다. 3월 15일에 비하여 6월 15일 조사에는 506명의 인명피해가 늘었다. 여순항쟁 발발 1주년이 되던 10월 25일 전남도 당국의 조사에서는 사망·중경상·행방불명을 구분하지 않아 아쉽지만, 인명피해가 11,131명으로 조사되었다. 6월 15일 조사에서 총 인명 피해가 8,759명이었던 것에 비하며 2,372명으로 인명 피해가 늘어났다.

전남도 당국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1949년 10월 25일 이후에도 학살은 지속되었다. 예컨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보도연맹 학살, 형무소 재소자 학살 등을 비롯하여 지리산·백운산 등의 토벌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 따라서 여순항쟁 피해 규모는 11,131명을 넘어 최소 15,000명에서 25,000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된다.

가해 주체별로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 신청자가 밝힌 가해자 분류), 국가권력의 구성세력인 군인 48.1%(944명), 경찰 36.8%(722명)에 의한 피해가 84.9%(1,666명)로 나타났다. 반면 좌익이라고 일컫는 반란군·빨치산·지방좌익·인민군에 의한 피해는 10.9%(214명)로 군경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기군의 점령한 기간에 비하여 국군과 경찰의 공세 기간이 길었던 것도 군경에 의한 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2> 여순사건 가해자에 따른 피해 현황

	경찰	군인	반란군	빨치산	지방좌익	인민군	미상	합계
빈도	722	944	100	79	24	11	83	1,963
비율	36.8	48.1	5.1	4.0	1.2	0.6	4.2	100.0
합계	84.9%		10.9%				4.2	100.0

### 3. 국가폭력의 반응

#### 1) 국가폭력과 망각

여순항쟁 발발부터 6·25전쟁 발발 직후까지 일명 부역자 색출, 빨갱이 소탕, 빨치산 토벌작전을 명분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은 피해 유족들에게 단지 학살 그 자체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반공국가의 지배체제를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만연하면서, 유족은 고통을 감내하고 순응하며 살아야만 했다.

반공을 국시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부분 유족은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족을 잃은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 두어야만 했다. 학살 이후 계속된 유·무형의 국가폭력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굵지 않은 시선 및 차별은 학살을 망각하도록 강요했으며, 또는 스스로 망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폭력의 참담하고도 끔찍한 학살의 장면은 평생의 고통으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㉔ 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나 오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 생전 안 해. 우리 마음 상할까나 생전 안 해. 한 해집니다. 나도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그런 일 (아들이 군대에서 사고로 사망) 우리 자식들한테 한번을 안 해. 눈물 나고 그럴까 봐. 내가 있는 자식도 호강스럽게 못 했는데 죽은 자식 이야기를 해서 남은 자식들한테 마음 상할까 봐 한 번을 안 했어.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 갑습니다. 내가 생각하면(이○○ 증언, 『한번도』, 76쪽)

㉕ 문) 너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증)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지 어찌해.

문) 피해가 많으셨는데 유족 가입이나 뭐 그런 활동은 안 하셨어요?

증) 들어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해.

문) 보상도 받으시고 그러셔야 할 텐데요?

증) 보상받아 뭐 할거여. 죽어버리면 끝나는데.(김○○ 증언, 『한번도』, 175쪽)

㉖ 6.25가 지난 반백년 동안 경찰만 보면 사지가 떨렸다. 끔찍한 장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경이 수복한 지 얼마 안 있어, 박○○이 밭에 새를 쫓으러 가는데 강둑에서 경찰이 부역자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손이 묶인 부역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직면하고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의 총알이 그들의 발보다 빨랐다. 며칠 후에는 본량지서 앞에서 못 볼 것을 봤다. 박○○가 지서 앞을 지나갈 때였다. 당시 지서에는 대나무로 죽창을 깎아 담을 둘렀는데 정문 앞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람 목을 잘라 죽창에 걸어 놓는 것이다. 아버지가 어디에선가 그렇게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박○○ 증언, 『골령골』, 299쪽)

이○○의 증언처럼, 피학살자 유족 대부분의 처지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후세대에게 말한다

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고 가슴만 아파할 것이 뻔함으로 망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은 아예 피해 신고조차 꺼리고 있다. 억울함과 분함을 혼자 감내하고 있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 고 산 사람이라도 제대로 살아야 하기에, 그 상처를 파헤칠수록 아픔은 후세대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기에 망각을 위해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박○○의 유족처럼, 일부 유족의 경우 과거 학살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망각과 공포는 증언 거부와 진실화해위원회 피해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기저에는 정권안보와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법적 구속력보다 훨씬 크게 작용했던 ‘빨갱이’라는 주변의 시선과 연좌제 때문이다.

여순항쟁 당시 일명 부역혐의자에 대한 끔찍한 학살은 6·25전쟁에서 재현되었다.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을 통한 불법적 부당한 학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 특수한 시기에 발생한 학살은 일상적 생활에서도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망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앞서지도 말고, 끝에도 서지 말고 딱 중간만큼만 해라”는 자조적인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지만, ‘빨갱이’ 가족이라는 시선과 연좌제는 2000년 초반까지도 유족에게는 절대적 망각을 강요하였다. 그 망각은 후세대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1세대 유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응방법이 기억의 망각이었다면, 2세대는 1세대의 망각으로 인하여 단절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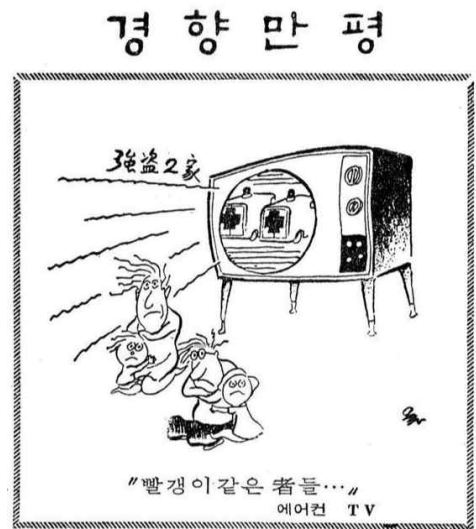
## 2) ‘빨갱이’와 자포자기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차별은 학살의 기억을 망각하고자 했다. 반면,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국가지배체제의 강화과정에서 시행된 반공교육의 결과 국가체제에 순응한 유족도 일부 있었다.

가족을 잃은 유족 중 많은 사람이 ‘빨갱이 콤플렉스’를 갖고 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저에 깔린 생각은 피학살자가 기본적으로 좌익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한다. 피학살자들이 국가에 의해 학살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빨갱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림-5>는 강도사건의 범인을 빨갱이로 표현한 것을 풍자한 만평이다.

‘빨갱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순항쟁 이후 법과 제도의 정비로 탄생한 국가보안법, 계엄법, 유숙제 등은 스스로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여기에 문화예술 작품도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사람, 죽여야만 하는 사람”으로 사회 인식되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 더욱이 반공교육은 ‘빨갱이’에 대한 기피증과 증오심이 학습되면서, 스스로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입증해야 하였다.

㉔ 큰형님이 국민학교 때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경찰들이 와 가지고 빨갱이 자식이라고 학교에 안 나



<그림-5> 1974년 7월 27일

오면 좋겠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놀림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학교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왜 내가 학교를 못 다녔는가 하고 원망을 하셨습니다.(서○○ 증언, 『나 죄없』, 72쪽)

㉞ 공무원 생활 동안 빨갱이라는 말을 듣게 될까봐 오래도록 감추고 살았던 것도 있었겠지요.<중략> 우리는 결혼할 때 중매로 했는데. 열두 살 차이가 나는 처제가 하루는 막 울고 와서 그 집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 집안 빨갱이 집안이라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집사람이 하더라고요. (김○○ 증언, 『한번도』, 148쪽)

㉞ 요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데 제발 잘 해결되어서 여순사건 유족 자녀들이 빨갱이 소리 안 듣고 세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반란군 새끼들이라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냥 찢어 죽여버리고 잡지. 우리들 그런 소리 들으면 어찌게 되었든지 간에 죽여버리고 싶은 욕을 하고 그러죠.(박○○ 증언, 『한번도』, 103쪽)

‘망각’의 기저에도 ‘빨갱이’라는 무지막지한 말이 존재했다. 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반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빨갱이’는 사회의 악으로 굳건하게 자리하였다. 물론 여순항쟁과 6·25전쟁에서 군경의 끔찍한 학살도 모두 빨갱이의 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였다.

㉞의 서○○ 증언처럼, 빨갱이 가족과는 왕래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심리를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주입하였다. 어린아이의 상처는 크면서 원망으로 자리하였다. ㉞의 김○○의 증언은 빨갱이와는 어떤 것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반공의식이 얼마나 확고하게 주입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 유족의 가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 때 TV에서 방영된 드라마에서도 ‘빨갱이’는 매우 악랄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다. 특히 드라마에서는 간첩과 빨갱이를 동의어로 간주하여 빨갱이와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사회의 저변에 확충시켰다. 이러한 기저는 과거의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회로 만들었고, 책임자 처벌이나 시시비비를 말하는 것은 금기어가 되었다.

박○○의 증언은 비록 피해 유족 중 일부의 경우이지만, 어려서부터 냉대와 차별의 시작점이었던 ‘빨갱이’란 단어가 여전히 사회 전반에서 통용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반공을 국시하면서 빨갱이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게 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체제의 잘못된 반공교육의 효과는 여전히 있다. 국가에 의해 생산된 ‘빨갱이’ 담론, 즉 반공교육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 3) 자발적 복종

반공이 국시로 자리하고, 국가가 정치·사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구조에서 청·장년기를 보내야만 했던 유족에게 세상은 한 치의 앞도 보이지 않은 어둠 그 자체였다. 어둠의 시대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복종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다. 자발적인 복종은 ‘빨갱이’ 담론과 연좌제의 국가(사회)에서 유족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과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족 중에는 남들보다 더 국가체제에 복종하고, 앞장서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㉞ 마을공회당은 청·장년뿐만 아니라 소년까지 동원해 7개 보초막에서 2인 1조로 보초를 섰다. 하룻밤에 3편9를 해야 했으니 하루에 42명이 동원되었다. 최○○는 13살 어린 나이에 짚신을 신고 보초를 섰다.

삼촌(최○○) 같은 빨갱이를 잡기 위해서였다.(최○○의 증언, 『골령골』, 292쪽)

㉠ 정○○에게 고향에서 살아내는 것은 녹록지가 않았다. 섬에서는 나쁜 소문 하나가 나면, 섬전체에 금방 퍼지고 오랜 기간 소문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삼촌이 빨갱이로 찍힌 그에게 이장, 반장도 언감생심이었다. 더욱 악착같이 살아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꿈은 소위 지역유지가 되는 것이었다.(정○○의 증언, 『골령골』, 320쪽)

㉠의 증언자 최○○는 아버지가 군인에게 학살되자 삼촌이 산으로 입산하였다. 마을에서는 보초대를 만들어 빨치산을 막았다. 최○○는 13살의 나이로 보초를 섰다. 스스로가 빨갱이가 아니라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의 증언자 정○○는 주류사회에 편입하기 위해 돈이 최고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살았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장, 평통자문위원, 봉사클럽 등에서 활동하였다. 최○○와 정○○가 청·장년의 살았던 시기를 대입하면, 박정희의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들은 국가에 복종하고, 충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빨갱이란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복종과 충성만이 존재했다.

복종과 충성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반공주의자 된 유족도 상당하다. 그래서 국가폭력이라는 관계와 개인의 상처를 같은 맥락으로 보지 않는다. 즉 개인의 상처는 억울하고 분한다고 하지만, 국가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 4) 진상규명 운동

여순항쟁 유족회는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유족회는 대체로 피해 사실에 대한 개별적인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반면, 극소수 유족은 개인 차원의 피해를 넘어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여순항쟁 당시 순천철도청 철도원이었던 장환봉의 유족이다. 장환봉은 당시 호남계엄지구사령부의 군법회의에서 총살형 집행되었다. 유족 장○○는 민간인의 군사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2012년 형사 재심을 신청하였다. 아울러 여순항쟁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며 1인 시위도 병행하였다. 2020년 1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서는 피해자 장환봉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그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 받은 피해자 유족들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다.

유족이 앞장서서 진상규명 운동은 조금씩 탄력을 붙고 있다. 화가 박금만은 유족 2세대이다. 대체로 피해자, 억울한 죽음을 소재로 작업한 것과 달리, 화가는 여순항쟁의 역사적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춰 작업하고 있다. <사진-6>은 1948년 10월 20일 ‘여수군 인민대회’의 모습이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당시 여수 인민들은 왜 항쟁의 대열에 동참하고 지지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6> 여수군 인민대회

#### 4. 나오면서



분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에서 명시한 민주주의 다양성과 자유를 여러 형태로 압제하고 있다. 특히 여순항쟁 이후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헌법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순항쟁과 6·25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유족은 국가권력의 물리적인 폭력 및 연좌제 등 빨갱이도 대변되는 유·무형의 폭력과 차별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청·장년기에 겪었던 빨갱이 자식이라는 차별과 좌절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러한 삶은 노년에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법을 제정으로 일부 유족의 명예가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국가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 사법부의 사과에도 행정부나 입법부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유족들의 시각과 반응은 여전히 두렵다는 것이다. 국가(정부)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국가 책무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유족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가 지속된다면 정상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폭력(과거사)은 유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척도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상당한 영향은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청·장년기에 겪었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민간인 학살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통합으로 나아가는 핵심에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즉, 정의없는 평화, 정의없는 상생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